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2-02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13483 등록면허세 등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
원고, 항소인	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담당변호사 최○○
피고, 피항소인	○○도 ○○군수
제 1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2023. 6. 22. 선고 2022구합74790 판결
변 론 종 결	2024. 9. 6.
판 결 선 고	2024. 11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1. 3. 8.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환급 경정청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2-02

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.

원고는 이 법원에서도,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○○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으므로 현물출자가액을 기초로 등록면허세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,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점(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법인설립등기가 자본금의 총액을 180억 원으로 하여 마쳐진 이상 그 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으로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.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2-02

재판장 판사 심○○

판사 차○○

판사 이○○